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소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정원의 복수직렬을 확대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6항제9호 중 “보건의료지원 등 사업에 대한 관리”를 “보건의료지원 등 사업 및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별표 2 중 총계 “901”을 “902”로 하고, 일반직 계 “891”를 “892”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7”을 “5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을 “4”로 하고, “행정주사·보건주사 또는 전산주사 6” 다음에 “행정주사·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3”을 신설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84”를 “85”로 하고, 약무주사 “4”를 “2”로 하며, “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6” 다음에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0”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34” 다음에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보건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 8”을 신

설하며,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8”을 삭제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904”을 “905”로 하고, 일반직 계 “894”를 “89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7”을 “5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을 “4”로 하고, “행정주사·보건주사 또는 전산주사 6” 다음에 “행정주사·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3”을 신설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93”을 “94”로 하고, 약무주사 “4”를 “2”로 하며, “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5” 다음에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0”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0”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30” 다음에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보건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 8”을 신설하며,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8”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보건서기보·전산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3”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3”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삭제한다.

별표 4 중 “시설서기보 3” 다음에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11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을 “행정서기보 · 사회복지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명”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14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3조 중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1명)”을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 사회복지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 ⑮ (생 략)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통상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⑯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u>보건의료지원 등 사업에 대한 관리</u>	9. ----- <u>보건의료지원 등 사업 및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u>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 ③ (생 략)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단서 신설>	④ ----- ----- ----- ----- ----- ----- ----- ----- ----- ----- ----- ----- ----- ----- ----- ----- <u>다만,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u>

⑤ ~ ⑫ (생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01</u>	<u>902</u>	+1
·	·	·	
·	·	·	
일반직 계	<u>891</u>	<u>892</u>	+1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57</u>	<u>56</u>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원	<u>3</u>	<u>4</u>	+1
·	·	·	
·	·	·	
행정주사 · 보건주사 또는 전 산주사	6		
<u>행정주사 · 보건주사 또는 약 무주사</u>	<u><신 설></u>	<u>3</u>	+3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 무주사 · 시설주사 · 공업 주사 또는 간호주사	<u>84</u>	<u>85</u>	+1

.	.	.	
.	.	.	
약무주사	<u>4</u>	<u>2</u>	-2
.	.	.	
<u>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u>	<u>1</u>	<u><삭 제></u>	-1
.	.	.	
.	.	.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 보 또는 보건주사보	6		
<u>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u>	<u><신 설></u>	<u>10</u>	+10
.	.	.	
<u>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u>	<u>10</u>	<u><삭 제></u>	-10
.	.	.	
.	.	.	
행정서기	34		
<u>행정서기 · 사회복지서기 · 보건서기 · 전산서기 · 시 설서기 또는 공업서기</u>	<u><신 설></u>	<u>8</u>	+8
<u>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u>	<u>8</u>	<u><삭 제></u>	-8
.	.	.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04</u>	<u>905</u>	+1
·	·	·	
·	·	·	
일반직 계	<u>894</u>	<u>895</u>	+1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57</u>	<u>56</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원	<u>3</u>	<u>4</u>	+1
·	·	·	
·	·	·	
행정주사·보건주사 또는 전산주사	6		
<u>행정주사·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u>	<u><신 설></u>	<u>3</u>	+3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u>93</u>	<u>94</u>	+1
·	·	·	

·	·	·	
약무주사	<u>4</u>	<u>2</u>	-2
·	·	·	
<u>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u>	<u>1</u>	<u><삭 제></u>	-1
·	·	·	
·	·	·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 보 또는 보건주사보	5		
<u>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u> <u>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u> <u>또는 공업주사보</u>	<u><신 설></u>	<u>10</u>	+10
·	·	·	
<u>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u>	<u>10</u>	<u><삭 제></u>	-10
·	·	·	
·	·	·	
행정서기	30		
<u>행정서기 · 사회복지서기 ·</u> <u>보건서기 · 전산서기 · 시</u> <u>설서기 또는 공업서기</u>	<u><신 설></u>	<u>8</u>	+8
<u>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u>	<u>8</u>	<u><삭 제></u>	-8
·	·	·	
·	·	·	

행정서기·보건서기 또는 전 산서기	1		
<u>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 보·보건서기보·전산서 기보·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u>	<u><신 설></u>	<u>3</u>	+3
<u>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 기보</u>	<u>3</u>	<u><삭 제></u>	-3
·	·	·	
·	·	·	

[별표 4]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시설서기보	3		
<u>공업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u>열관리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